

# 2024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안내문

- 바우처 자격 결정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**“직접”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**해야 합니다.
  -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- \* 지역별 제공기관 검색 :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([www.socialservice.or.kr](http://www.socialservice.or.kr))
  -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공인력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기존 계약을 해지한 다음 새로운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.
- 이용자는 제공기관과 상담 시에 바우처 이용자임을 알려 정부지원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
- 이용자는 정해진 본인부담금을 서비스 개시일 이전까지 제공기관에 납부 해야 합니다.
- 바우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**입니다. 이용 시기 조정에 유의 바랍니다.
- 태아 유형, 출산 순위에 따라 서비스기간이 다릅니다. 이용자는 본인 해당 유형의 서비스기간 중에서 단축, 표준, 연장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.
- 서비스기간 선택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지원되어 본인부담금이 다르니 반드시 본인부담금을 확인** 하시기 바랍니다.
- 이용자가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, 제공기관이 그 내용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하여 **필독) 바우처가 생성된 이후에는 선택한 서비스 기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선택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.**

## 바우처 서비스 기간 및 시간

- 1주 5일, 1일 9시간 원칙(휴게시간 1시간 포함) \*(예) 09:00~18:00(휴게시간 12:00~13:00)
- \* 점심시간 등을 휴게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, 제공인력 식사는 산모가 제공
- 토요일, 공휴일, 일요일, 국경일, 명절 등은 휴무 원칙
- 이용자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서비스 제공 요일 및 시간을 원칙과 달리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공기관과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(계약에 반영 필요)
- 다만, 이 경우에도 22시~07시 시간대에는 바우처 서비스 제공은 불가
- ★ 바우처 유효기간 :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(60일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)
- 단, 삼태아 이상 “연장”에 한하여 출산일로부터 80일 이내

구분				서비스 기간			서비스 가격 (단위:천원)			정부지원금			본인부담금 (업체별상이)		
				단축	표준	연장	단축	표준	연장	단축	표준	연장	단축	표준	연장
단태아	첫째아	A-가-①형	자격확인*	5	10	15	688	1,376	2,064	620	1,100	1,444	68	276	620
		A-통합-①형	150% 이하							537	949	1,238	151	427	826
		A-라-①형	150% 초과(예외지원)							433	729	991	255	647	1,073
	둘째아	A-가-②형	자격확인*	10	15	20	1,376	2,064	2,752	1,266	1,692	1,981	110	372	771
		A-통합-②형	150% 이하							1,100	1,444	1,679	276	620	1,073
		A-라-②형	150% 초과(예외지원)							894	1,136	1,376	482	928	1,376
	셋째아 이상	A-가-③형	자격확인*	10	15	20	1,376	2,064	2,752	1,293	1,733	2,036	83	331	716
		A-통합-③형	150% 이하							1,128	1,465	1,707	248	599	1,045
		A-라-③형	150% 초과(예외지원)							922	1,176	1,431	454	888	1,321
쌍태아 (중증+단태아)	인력 1명	B-가-①형	자격확인*	10	15	20	1,720	2,580	3,440	1,651	2,219	2,614	69	361	826
		B-통합-①형	150% 이하							1,479	1,935	2,305	241	645	1,135
		B-라-①형	150% 초과(예외지원)							1,204	1,523	1,857	516	1,057	1,583
	인력 2명	B-가-②형	자격확인*	10	15	20	2,656	3,984	5,312	2,441	3,254	4,019	215	730	1,293
		B-통합-②형	150% 이하							2,216	2,967	3,675	440	1,017	1,637
		B-라-②형	150% 초과(예외지원)							1,880	2,537	3,159	776	1,447	2,153
삼태아 (중증+쌍태아)	인력 2명	C-가-①형	자격확인*	15	25	40	5,160	8,600	13,760	5,056	7,740	11,284	104	860	2,476
		C-통합-①형	150% 이하							4,645	6,881	10,320	515	1,719	3,440
		C-라-①형	150% 초과(예외지원)							3,974	5,934	8,944	1,186	2,666	4,816
	인력 3명	C-가-②형	자격확인*	15	25	40	5,976	9,960	15,936	5,856	8,964	13,068	120	996	2,868
		C-통합-②형	150% 이하							5,379	7,969	11,952	597	1,991	3,984
		C-라-②형	150% 초과(예외지원)							4,602	6,872	10,358	1,374	3,088	5,578
사태아 이상 (중증+삼태아 이상)	인력 2명	D-가-①형	자격확인*	15	25	40	5,568	9,280	14,848	5,456	8,352	12,176	112	928	2,672
		D-통합-①형	150% 이하							5,012	7,425	11,136	556	1,855	3,712
		D-라-①형	150% 초과(예외지원)							4,288	6,403	9,651	1,280	2,877	5,197
	인력 4명	D-가-②형	자격확인*	15	25	40	7,968	13,280	21,248	7,808	11,953	17,424	160	1,327	3,824
		D-통합-②형	150% 이하							7,172	10,625	15,936	796	2,655	5,312
		D-라-②형	150% 초과(예외지원)							6,136	9,163	13,811	1,832	4,117	7,437

\* 자격확인: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, 차상위 계층에 해당

8. 정부 바우처로 제공하는 표준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.  
- 표준서비스 이외 부가서비스가 필요한 이용자께서는 별도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.

산모를 위한 서비스
- 산모 신체 상태 조사
- 유방관리(안마, 마사지 포함되지 않음)
- 산후 부종관리(안마, 마사지 포함되지 않음), 산후 체조지원
- 산모 영양관리 및 식사준비
- 좌욕지원, 산모 위생관리
- 수유, 산후회복, 신생아 케어 관련 산모 교육
-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
- 산모·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
- 산모·신생아 의류 등 세탁
- 상담 및 말벗

신생아를 위한 서비스
- 신생아 건강상태 확인
- 신생아 청결관리
- 신생아 수유지원
- 신생아 위생관리
- 예방접종 지원
- 감염 예방 및 관리
-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

표준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 (부가서비스 예시)
■ 산모·신생아 주생활 공간 이외 청소
- 다른 가족 방·화장실, 공용 공간(현관, 서재, 드레스 룸, 베란다, 창고, 유리창, 마당 등), 수납공간(싱크대, 냉장고, 장롱, 찬장, 신발장 등), 기타 비일상적인 집안 대청소
■ 산모·신생아 의류 등 이외 세탁
- 다른 가족 빨래, 고가의류, 대형 빨래(침구, 커튼, 신발류, 가방류, 부피 큰 계절 옷, 목은 빨래 등)
■ 산모·신생아 이외 가족·친지 식사 준비, 자택 외 다른 장소에서의 식사준비, 잔치음식, 저장식품(김치·장류·장아찌 등), 차 접대 수준을 넘는 손님 접대
■ 기타
-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가구/물건 옮기기
- 큰아이 또는 다른 가족 돌보기
- 운전 대행
- 애완동물 돌보기 등

9. 이용자와 종사자는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신뢰하여야 하며, 더 좋은 서비스를 받고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

10. 출산박람회, 베이비 페어 등에서 시·군·구(보건소)에 등록되지 않은 제공기관이 정부지원 등록 업체로 사칭하여 계약 하는 사례 등 사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\* 시군구(보건소)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(www.socialservice.or.kr)를 통해 시군구(보건소) 등록기관 여부 확인

11. 보건복지부는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권 행사를 위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“이용자 만족도 실시간 평가”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서비스 이용 종료 시 SMS 문자가 송부되면 응답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2. **국민행복카드 발급**

가능 : 롯데, 삼성, 신한, KB국민, BC(IBK기업, 농협, 경남, 광주, 대구, 신한, 제주, 우체국, 부산, 수협, 하나, 우리은행)  
SC제일, 전북은행 정부지원금 결제불가로 다른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 재발급 필요

**이용자 준수사항**

- ① 이용자는 제공인력의 인격과 전문성을 존중해야 합니다.
- ② 이용자는 서비스 표준 및 계약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요청하여야 합니다.  
\* 산모 및 신생아 외 다른 가족에 대한 돌봄·가사활동 지원 등 부가서비스는 바우처 표준서비스에 미포함, 부가서비스를 추가 구매한 경우에만 서비스 요청 가능
- ③ 이용자가 제공인력에게 서비스를 요청할 때에는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정중하게 요청하여야 합니다.
- ④ 제공인력에게는 공식적인 호칭(관리사님 등)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- ⑤ 욕설, 신체적 폭력 등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.  
\* 구타 등 신체적 폭력을 행할 경우 서비스 이용 중지는 물론, 민·형사상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<언어·신체적 폭력의 범주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언어적폭력) 욕설, 헐박, 위협 등</li> <li>* "야", "어이" 등은 인격을 무시하는 호칭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.</li> <li>• (신체적폭력) 밀기, 멱살잡기, 붙잡기, 뺨대리기, 깨물기, 침 뱉기, 목 조르기, 물건 던지기, 주먹이나 발로 차기, 갈 겨눔, 찌름 등 치명적인 수준의 행위 등</li> </ul>

⑥ 제공인력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. 특히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이나 과도한 노출, 성적 농담 등으로 불쾌감을 주는 행위도 성희롱에 속합니다.  
\* 이용자 및 그 가족의 성희롱 행위가 밝혀지는 경우 해당 제공인력은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, 정도에 따라 서비스 이용 자격 박탈,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등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
<성희롱·성폭력 행위의 범주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시각적성희롱) 음란한 사진·출판물, 성적인 몸짓, 과도한 신체 노출</li> <li>• (언어적성희롱) 음담패설, 성적인 행위를 암시하는 말이나 농담</li> <li>• (신체적성희롱) 성적 접촉, 포옹, 애무, 추행, 강간</li> <li>• (기타) 음란물 보여주거나 함께 보자는 권유, 데이트나 교제 강요, 술자리 시중 요구 등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언어나 행동 등</li> </ul>

⑦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을 지켜주시고, 제공인력이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설 수 있는 휴게시간(1일 1시간)을 반드시 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